한국체육대학교 학칙

개정 2019. 11. 22. 규정 제808호

1. 개정이유

○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·가공· 수선·판매,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(이하 "학교기업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한 학교기업 설립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○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(안 제18조의2제4항)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(참고) :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붙 임:개정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학칙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라 본교 산학협력단에 학교 기업을 둘 수 있으며,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808호, 2019. 12. 18.)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8조의2(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) ①~③(생 략)	제18조의2(신학협력단의 설립운영) ①~③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④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
	법률」 제36조에 따라 본교 산학협력단에
	학교기업을 둘 수 있으며, 설치 및 운영에 관한
	사항은 따로 정한다.
	부 칙(제808호, 2019. 12. 18.)
	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